

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 4.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전문위원 권오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4 - 51

나. 발의자: 박주선 의원 외 7명

다. 발의일자: 2024년 4월 23일

라. 회부일자: 2024년 4월 24일

2. 제안이유

오늘날 1회용품¹⁾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앞장서는 환경보호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1) 1회용품: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봉투·쇼핑백/ 이쑤시개(전분성분 제외) 등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협조부서: 자원순환과
- 다. 입법예고: 2024. 4. 23. ~ 4. 29.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최근 배달 및 카페 문화의 확산으로 급증하는 1회용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관내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저감」 을 이끌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u>

- 안 제7조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집단급식소, 식품집객업, 대규모점포 등)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에는 위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p> <p>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p> <p>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p> <p>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p> <p>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p>

<p><u>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7조 · 제8조 (생 략)</u></p>	<p><u>제8조 · 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u></p>
---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포장(TAKE-OUT) 및 배달문화의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²⁾ 해당 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여 관내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임
 -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시행하고 규제를 이어오다, 지난 ’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획일적인 사용규제 대신 권고 및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관리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 식품접객업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의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한 규제 완화
- 이번 개정안으로 관내 환경보호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1회용품 감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1회용품」 발생량 추이

- 생활폐기물 중 일회용품 발생량은 703,327톤/년 _ 제6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2022년 기준)
- 일회용 숟가락 공급량: 5,043톤('19) → 7,196톤('21)
- 일회용 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 개('19) → 약 10억 2,388만 개('21) _ 18개 자발적 협약업체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주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자원순환과 과장 유영호

(담당 : 직급 행정8급 고형석 / ☎ 2600-424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